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미결구금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프랑스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20년 10월 02일 n° 2020-858/859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파리1 팡테옹-소르본 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심승범

1. 들어가며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상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비례성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 조치이다.¹⁾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2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²⁾시 인간 존엄성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³⁾ 이는 2020년 1월 30일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과 그 맥이 이어진 것으로, 추후 프랑스 사회에서 구속된 미결수의 존엄성을 포함한 인권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먼저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제정신청되기까지 어떤 상황과 배경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 이유와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근거로 위헌결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효과와 영향이 무엇인지 차례

1) 이은모·김정환, 형사소송법, 제7판, 박영사, 2019, 251-252면.

2) 혹은 원어 그대로 ‘임시구금(détention provisoire)’이라고 불린다.

3) Décision n° 2020-858/859 QPC du 2 octobre 2020.

로 확인할 것이다.

2.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 배경

유럽인권재판소는 2020년 1월 30일 구속 수감자의 비인간적 대우[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협약⁴⁾(이하 ‘유럽인권협약’ 제3조)] 및 실질적 구제수단의 부재(유럽인권협약 제13조)를 이유로 피청구인 프랑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⁵⁾ 이는 프랑스 국내의 6개의 교도소 (Nîmes, Nice, Fresnes, Ducos en Martinique, Baie-Mahault en Guadeloupe et Faa’a Nuutania en Polynésie)에 수감된 자들에 의해 32개의 제소로 이루어졌다.⁶⁾ 프랑스 내 188개의 교정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61,065명임에 반해 2019년 10월 1일 기준 70,818명이 수감되어 있다.⁷⁾ 또한 쥐나 벼룩 등이 빈번히 출몰하면서 구속된 방의 위생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⁸⁾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에 교도소 인구과밀수용, 존엄성이 존중되지 못한 구속 환경과 예방적 구제수단의 부재를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프랑스 정부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촉구했다.⁹⁾ 이에 대해 프랑스 법무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이미 교도소 보수를 위한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¹⁰⁾

4) 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5) CEDH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30 janvier 2020, AFFAIRE J.M.B. ET AUTRES c. FRANCE.

6) Éric SENNA, Conditions de détention indignes : la France condamnée par la CEDH,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conditions-de-detention-indignes-france-condamnee-par-cedh#.YARaiuhKiM9>, Dalloz actualité, 2020. 02. 06 (최종 검색일 : 2021. 01. 17).

7) CNEWS, La CEDH condamne la France pour surpopulation carcerale, <https://www.cnews.fr/france/2020-01-30/la-cedh-condamne-la-france-pour-surpopulation-carcerale-922616>, 2020. 01. 30 (최종 검색일 : 2021. 01. 17).

8) Julien MUCCHIELLI, CEDH : la France condamnée pour ses prisons indignes,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cedh-france-condamnee-pour-ses-prisons-indignes#.YARpeehKiM8>, 2020. 01. 31 (최종 검색일 : 2021. 01. 17).

9) AFP, Dignité humaine en pris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donne 5 mois au Parlement, https://www.huffingtonpost.fr/entry/dignite-humaine-prison-conseil-constitutionnel-5-mois-parlement_fr_5f76eaac5b66377b280635e, 2020. 10. 02(최종 검색일 : 2021. 01. 17).

10) 프랑스 법무부는 2020년까지 7,000개의 방을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2027년까지 8,000개의 방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CNEWS, 앞의 기사, 2020. 01. 30.

사안에서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은 Ploemur 교도소에 구속된 미결수와 국제교도소관측기구(Observatoire international des prisons) 등에 의해 제청 신청되었다.¹¹⁾ 먼저 미결수의 변호인 Maxime GOUACHE에 따르면 그의 “의뢰인은 8m²(평방 미터) 교도소 내 땅에 매트리스를 놓고 지내고 있지만, 헨스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문제없다고 평가했으며”, 또한 국제교도소관측기구의 변호사 Patrice SPINOSI 따르면 방에는 쥐, 배드버그, 지네가 자주 나오는 등 비위생적임을 강조했다.¹²⁾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프랑스 형사소송법전 제137-4조, 제144조 그리고 제144-1조는 수사판사 또는 자유구금판사가 실질적으로 구금 여건이 비인간적 대우에 해당하고 인간 존엄성과 가치,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l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le droit au recours effectif)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¹³⁾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파기원은 “구속을 규정하는 입법 조항은 미결수의 존엄성 보장 여부에 따라 구금의 시행 및 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이어 “미결수의 존엄성 침해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¹⁴⁾ 파기원은 이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3.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검토

프랑스 파기원은 2020년 7월 9일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

11) Jean-Baptiste JACQUIN, Conditions de détention : le Conseil constitutionnel exige une loi pour faire respecter la dignité humaine en prison.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0/10/02/conditions-de-detention-le-conseil-constitutionnel-exige-une-loi-pour-faire-respecter-la-dignite-humaine-en-prison_6054482_3224.html, Le Monde, 2020, 10, 02 (최종 검색일 : 2021, 01, 16).

12) Jean-Baptiste JACQUIN, 앞의 기사, Le Monde, 2020, 10, 02.

13)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arrêts n° 1433 et 1434 du 8 juillet 2020.

14) 앞의 프랑스 파기원 판결.

청하였다.¹⁵⁾ 헌법재판소는 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이 프랑스 형사소송법전¹⁶⁾ 제137-3조¹⁷⁾, 제144조¹⁸⁾ 그리고 제144-1조¹⁹⁾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²⁰⁾ 다시 말해, 미결구금 시 구금시설의 환경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의 부재가 위헌인지에 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 헌법, 프랑스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 조직법률에 대한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²¹⁾, 유럽인권협약 및 무죄추정원칙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에 대한 2000년 6월 15일 법률명령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였다.²²⁾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과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제9조 및 제16조를 인용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 제1조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품격을 떨어뜨리고자 했던 체제에 대해 자유로운 인민들이 승리를 쟁취한 다음날 프랑스 인민은 인종, 종교, 믿음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고 성스러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새로이 선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어떠한 형태

15) 앞의 프랑스 파기원 판결.

16) 조문 번역은 2011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였다.

17) “① 석방구금판사가 구속을 명하거나, 이를 연장하거나 또는 석방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제143-1조 및 제144조를 참고해서 구속이 합당한 이유와 사법통제로는 부족한 이유에 대해 법적인 측면 및 사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후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 이 경우 소송서류 전체의 사본을 수령한 예심수사피의자에게 명령을 고지한다.”

18) “구속은 다음 각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사법통제 또는 전자감시하의 가택구금으로 다음 각호에 정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연장된다 : 1.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증거 또는 물증의 보전, 2. 증인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의 방지, 3. 예심수사피의자와 공범 또는 공모자 사이의 부정행위의 방지, 4. 예심수사피의자의 보호, 5. 형벌 집행을 위한 예심수사피의자의 신병 확보, 6. 범죄의 종료 또는 재발 방지, 7. 범죄의 중대성, 범행상황 또는 피해 규모 때문에 공공질서에 대하여 초래된 특별하고 지속적인 혼란의 방지. 이와 같은 혼란이 범죄로 인하여 직접초래 되어야 하며, 본항의 규정은 경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① 구속은 예심수사피의자와 관련된 범죄사실의 중대성 및 진실발견에 필요한 수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된다. ②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는, 제144조 및 본조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14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된 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20)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21) Ordonnance n° 58-1067 du 7 nov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22)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여 그 기준을 재확인하였다.²³⁾ 또한 1978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는 “누구든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도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엄중하게 억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8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는 “권리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며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프랑스 헌법 재판소는 미결수의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수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²⁴⁾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에 대한 자유박탈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사법 및 행정 당국의 몫이다.”²⁵⁾라고 판단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미결수의 존엄성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는 곳은 관련 당국과 법원이다. 또한 발생한 침해에 보상을 명할 곳 또한 그러하다.”라고 언급했다. 즉, 미결수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확인, 침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은 정부와 사법부의 몫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존엄성 침해를 확인하게 하는 구제수단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소는 입법상의 개정과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면서 “본 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구금 조건에 대해 미결수가 판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책임을 부과한다.”라고 판시했다.²⁶⁾

먼저 행정법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구금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미결수는 행정소송법²⁷⁾ 제L521-2조 또는 제L521-3조에 근거하여 긴급심리로 행정판사에게 존엄성 침해에 대

23)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24)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25)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26)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27) 조문 번역은 2018년에 작성된 법제처 ‘프랑스 행정소송법’을 참고하였다.

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²⁸⁾음을 확인했다. 즉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청구를 심사하는 긴급심리판사는 공공서비스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법에 따른 법인이나 사법에 따른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긴급심리판사는 이에 대해 48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²⁹⁾ 게다가 만일 “긴급한 경우 그리고 사전 행정결정이 부재한 경우에도 수리될 수 있는 단순 청구의 경우, 긴급심리판사는 어떠한 행정결정의 실행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유효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³⁰⁾ 하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모든 상황에 있어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구속을 종결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³¹⁾ 또한 국제교도소관측기구의 변호사 Patrice SPINOSI에 따르면, “실제로 행정판사는 빈번하게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없이 교정국이 미결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 이루어지도록 명한다.”³²⁾라고 행정적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사법적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전의 조문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전 제148조 제1항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속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전조 제1항에 정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언제든지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나 이는 동법 제144-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사실의 중대성 및 진실발견에 필요한 수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시 또는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증거 또는 물증의 보전, 증인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의 방지 또는 예심수사피의자와 공범 또는 공모자 사이의 부정행위의 방지 등 프랑스 형사소송법전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 한정된다.”³³⁾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전 제14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조는 “모든 사건과 절차에 있어, 범죄 재발의 심각한 위험이

28)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29) 프랑스 행정소송법전 제L521-2조.

30) 프랑스 행정소송법전 제L521-3조.

31)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32) Jean-Baptiste JACQUIN, 앞의 기사, Le Monde, 2020, 10, 02.

33)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학 전문가에 의해 중대한 병리학적 침해 또는 육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구속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 미결수의 석방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명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속에 대한 건강상 문제에 의한 석방 관련 조항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석방요청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사법관사에게 구속 중 몇몇 여건에 따라 발생한 존엄성 침해를 종결시킬 어떠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³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프랑스 헌법 제62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제61조³⁵⁾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공포되거나, 적용될 수 없다(제1항). 제61-1조³⁶⁾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공포 시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장래의 시기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규정이 발생시킨 영향들이 재검토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들을 정한다(제2항).”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떠한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권력과 모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기속한다.”³⁷⁾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시 폐지된다.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을 즉시 폐지하지 않고, 해당 조항이 즉시 폐지될 시, 위에 명시된 구속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결수가 석방요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개정입법시한을 2021년 3월 1일로 정하였다.³⁸⁾

34) 앞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35) “① 조직법률은 공포되기 전에, 헌법 제11조에서 언급된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의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며, 헌법재판소는 조직법률, 법률안, 의사규칙이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신고한다. ②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1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은 8일로 단축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는 공포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36) “①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에 법률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국사원 또는 과거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판한다. ② 조직법률은 본 조항의 적용요건을 정한다.”

37) 프랑스 헌법 제62조 제3항.

38) Décision n° 2020-858/859 QPC du 2 octobre 2020.

4. 나오며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입법부는 2021년 3월 1일 까지 미결수 구속 여건에 있어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단지 행정적 조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구속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명하는 사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만일 존엄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해결될 수 없다면, 답은 하나일 것이다, 석방. 분명, 존엄성을 침해하는 구속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석방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관점은 좋은 해결책이 아닐 것이고, 교정시설에서 직접 침해에 대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⁹⁾

2020년 7월 8일에 판결한 파기원은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미결수의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유보하는 것이 아닌 즉시 이에 대한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⁴⁰⁾ 또한 만일 요청에 따라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헌법에 반하는 비인간적 요소가 발견될 시, 이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미결수를 전자팔찌(bracelet électronique) 또는 거주지지정(assignation à résidence)을 명하고 그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¹⁾

매년 프랑스에서는 열악한 구속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차례 프랑스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프랑스 미결수의 인권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전 법률 개정에 대한 요청은 존엄성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강력한

39) Jean-Baptiste JACQUIN, 앞의 기사, Le Monde, 2020, 10, 02.

40) AFP, 앞의 기사, 2020. 10. 02.

41) AFP, 앞의 기사, 2020. 10. 02.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또한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지적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⁴²⁾ 이는 교도소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42) 뉴시스, '예견된 재앙' 구치소 집단감염...과밀, 어느 정도 길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4_0001293071&cID=10201&pID=10200, 2021. 01. 04 (최종 검색일 : 2021. 01. 17).